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회원자격규정

2020. 06. 12.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회원자격규정

2003. 12. 19. 제정

2009. 12. 22. 개정

2014. 12. 10. 개정

2016. 06. 30. 개정

2017. 12. 18. 개정

2019. 05. 20. 개정

2020. 06. 12.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의 정관 제7조에 규정된 회원 입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

본 협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정한다.

제3조(자격)

본 협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이사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학력, 경력, 능력과 아동청소년연극에 대한 관심과 기여도에 대하여 중점 심사 후 결정한다.

제4조(개인회원의 가입요건)

본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은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① 공연 장르에 3년 이상 종사자로서 아동청소년공연에 3편 이상 출연 또는 스태프로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단, 학생극 경력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09.12.22., 2016.6.30., 2017.12.18., 2020.06.12.〉
- ② 본 협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아동청소년연극발전에 기여도가 인정되는 평론, 아동문학(극작 포함), 연극학자 등 〈개정 2009.12.22.〉
- ③ 〈삭제 2009.12.22.〉
- ④ 사단법인 국제아동청소년 연극협회 윤리강령을 동의하고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자〈신설 2020.06.12.〉

제5조(단체회원의 가입요건) <개정 2014.12.10.>

본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① 창단 공연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된 단체로 3편 이상 공연실적이 있는 단체(아동청소년 공연에 준함) <개정 2016.6.30., 2020.06.12.>
-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극단 사무실, 상주 단원 등이 있는 전문 공연단체를 우선함 <개정 2016.6.30.>
- ③ 아동청소년공연 실적을 명확하게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단체 (증빙자료로 단체명과 공연명이 명시된 인쇄물(복사물 제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단, 인쇄물이 없을 시 동영상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한다.) <개정 2016.6.30., 2020.06.12.>
- ④ <삭제 2016.6.30.>

제6조(회원신청시 구비서류) <개정 2016.6.30.>

- ① 본 협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며 지회로 입회하는 경우에는 지회로 신청한다. 지회는 본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입회 처리한다.<신설 2020.06.12.>
- ② 개인회원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2., 2017.12.18, 2020.06.12.>
 1. 입회원서(소정양식) 1부
 2. 이력서(이력서를 증빙할 각종 자료 포함)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신설 2019.5.20.>
 5. 윤리 준수 서약서 1부 <신설 2020.06.12.>
- ③ 단체회원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12.>
 1. 협회 가입 신청서 1부
 2. 대표자의 이력서 1부
 3.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4. 회원 명단 1부
 5. <삭제 2020.06.12>
 6. 단체 활동 연혁(증빙자료 포함) 각 1부 (증빙자료로 단체명과 공연명이 명시된 인쇄물(복사물 제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단, 인쇄물이 없을 시 동영상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한다.) <개정 2016.6.30., 2020.06.12.>
 7.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1부 <개정 2016.6.30.>
 8.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신설 2019.5.20.>
 9. 윤리 준수 서약서 1부 <신설 2020.06.12.>

제7조(심의) <신설 2016.6.30.>

- ① 2인 이상의 이사로 ‘회원가입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인 및 단체회원의 가입을 심사하며 최종

결과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② 심의는 제출된 구비 서류로 하며 필요시 면접 심사를 할 수 있다.
- ③ 면접은 입회하고자 하는 개인은 본인인, 단체는 대표자가 직접 면접에 응해야 한다.

제8조(등록)

입회를 신청한 자로 이사회의 인준을 필한 회원 및 단체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고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단,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와 단체는 인준일로부터 1년간 입회할 수 없다. <개정 2009.12.22.>

제9조(회원자격 유지)

- ①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1년간 회비를 미납할 경우 자동적으로 회원의 권리가 정지되며, 정지 기간 포함 미납회비를 납부하면 다시 자동적으로 권리가 회복된다. 단, 협회 사무국은 권리정지 예상 개시일 1개월 전에 해당 회원에게 예고 통보를 해야 한다.
- ② 권리정지 후 5년까지 회원유지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회원의 소재지 및 연락처 파악이 불가할 경우 이사회의 인준을 통해 제명할 수 있다. <신설 2016.6.30.> <개정 2017.12.18.>
- ③ 제명 또는 탈퇴서를 제출한 회원은 3년경과 후 재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2., 2016.6.30., 2017.12.18.>
- ④ 회원은 대표자 변경 또는 소재지 및 연락처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협회 사무국에 고지해야 한다. <신설 2016.6.30.>

제10조(회비)

- ① 본 협회 가입회비는 개인회원 60,000원, 단체회원 150,000원으로 정한다. (가입 원년의 경우, 입회비와 회계연도 말까지의 월 회비를 선납하여야 하며 본 협회의 모든 회비는 선납을 원칙으로 회계처리 한다.)
- ② 회원의 회비는 개인회원 년 36,000원, 단체회원 년 120,000원으로 정하고 회비 및 가입회비의 조정은 매년 마지막 이사회에서 조정한다. <개정 2009.12.22., 2014.12.10., 2020.06.12.>
- ③ 회비가 미납된 회원은 해당연도 협회 사업에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16.6.30.>

제11조(탈퇴) <신설 2020.06.12.>

회원이 본 협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본부 및 소속 지회에 탈퇴서를 제출하고 소속지회장은 이를 소정 양식에 의거 본부 이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2조(부칙)

- ①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및 통상 관례에 준한다.

②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2003년 12월 19일 이사회 의결
2. 2009년 12월 22일 이사회 의결
3. 2014년 12월 10일 이사회 의결
4. 2016년 06월 30일 이사회 의결
5. 2017년 12월 18일 이사회 의결
6. 2019년 05월 20일 이사회 의결
7. 2020년 06월 12일 이사회 의결